

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3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개정이유

가. 하남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갈등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흡한 조례의 목적을 명료화, 공공갈등영향분석의 내용 규정 신설,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내용 명료화 및 구체화 등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목적의 명료화(안 제1조)
- 나. 공공갈등영향분석 중 내용 규정 신설(안 제9조)
- 다.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명료화(안 제10조)
- 라. 심의결과의 반영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6조)
- 마.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중 내용의 명료화 및 구체화(안 제17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2. 8. 17. ~ 2022. 9. 6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

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수립·추진함에 있어서” 를 “수립·추진하는 경우” 로, “강구하는” 을 “마련하는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수립·추진함에 있어서” 를 “수립·추진하는 경우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방” 을 “공공갈등의 예방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공공갈등 :” 을 각각 “공공갈등: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” 을 “갈등영향분석” 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2. 이해관계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
3.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4.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
5.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6.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
7.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공공갈등 예방·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2. 공공갈등관리대상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

3.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
4.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을 해촉 할” 을 “해촉할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·결정” 을 “심의·의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회피(回避) 할” 을 “회피할” 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

제16조 중 “제14조” 를 “제15조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하남시공공갈등조정협의회” 를 “공공갈등조정협의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정한다” 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” 을 “협의회 위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” 를 “경우 관련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” 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” 를 “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자치행정과 최용호
	팀장 직위 · 성명	총무팀장 강 학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정인복 (790-511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하남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공공갈등영향분석”이란 <u>시의 주요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<u>주요정책 등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·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하남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수립·추진하는 경우</u> ----- ----- -- <u>마련하는</u>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수립·추진하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</p>
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.

1. 시정 공공갈등 :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
2. 그 밖의 공공갈등 :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

② (생략)

제9조(공공갈등영향분석)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등을 결정하기 전에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공공갈등의 예방-----

-----.

1. --- 공공갈등: -----

2. ----- 공공갈등: -----

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공갈등영향분석) ① -----

----- 갈등영향분석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제10조(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2. 이해관계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
3.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4.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
5.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6.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
7.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

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공공갈등 예방·해결을 위한 종합계획
2.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
3.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
4.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
5.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·운영
6.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공갈등 예방·해결을 위한 종합계획
2.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
3.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
4.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
5.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·

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공공갈등 예방·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2. 공공갈등관리대상사업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
3.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에 관한 사항
4.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6조(심의결과의 반영)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공공갈등조정협의회) ①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하남시공공갈등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

-----.

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심의결과의 반영) -----
제15조-----

-----.

제17조(공공갈등조정협의회) ① -

----- 공공갈등조정협의회-----

-----.

② -----

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.

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, 전문가로 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9조(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·운영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에 관한 사항
2.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·활용에 관한 사항
3.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사항
4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·연구 사항

--- 호선(互選)한다.

③ 협의회 위원-----

-----.

④ -----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
조사·연구 사항

6.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
·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
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
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
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
수 있다.

제22조(수당 등) 제11조에 따라 설
치된 위원회 또는 제17조에 의
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
해서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
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
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
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
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
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22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협의회
에 출석한 -----

-----.

-----.